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1가단1495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원고에게, 망 F(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금 6,897,460원 및 그 중 금 4,105,351원에 대하여 2021. 5. 2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 D, E은 원고에게 각 4,598,307원 및 그 중 2,736,900원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가. 소외 F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6. 9.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금 7,663,845원¹⁾ 및 그 중 금 4,105,351원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 D, E은 원고에게 각 4,598,307원 및 그 중 2,736,900원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양수금 부분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번호 있는 경우 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한편 F이 2020. 8. 19.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느단97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10. 19. 수리된 사실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상속지분 3/9)은 금 6,897,460원 및 그 중 금 4,105,351원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각 상속지분 2/9)은 원고에게 각 4,598,307원 및 그 중 각 2,736,900원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3.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 6. 9.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망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이 3/9 상속지분이 있고,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2/9 상속지분이 있다.

3) 이 사건 증여 당시 F의 재산상태

가)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
- 용인시 수지구 G건물 제1층 H호
- 용인시 수지구 G건물 제1층 I호
- 용인시 수지구 G건물 제1층 J호
- 아래 무자력 판단에서 보는 이유로 위 H호, I호, J호는 적극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이 유일한 적극재산이다.

나) 소극재산

- ① K은행에 금 93,081,000원(2015. 5. 7. 신용대출발생)

- ② K은행에 금 93,081,000원(2017. 6. 8. 연체발생)
- ③ K은행에 금 75,500,000원(2015. 5. 7. 채무발생, 2016. 12.경 기준) - ④ K은행에 금 75,500,000원(2015. 5. 7. 채무발생, 2016. 12.경 기준)
- ⑤ L 은행에 12,316,000원(2015. 2. 5. 채무발생, 2017. 3. 경 기준)
- ⑥ M 주식회사에 금 14,535,695원
- 합계 364,013,695원 채무를 부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원고는, 위 가. 3) 나) 소극재산 중 ⑤ 채권은 2019. 12. 13., ⑥ 채권은 2018. 10. 26. 각 양수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각 통지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F에 대한 위 각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F의 무자력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 외에 용인시 수지구 G건물 제1층 H호, I호, J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2017. 7. 17.경 위 H호 부동산의 시가는 188,602,000원인 반면 피담보채무액은 287,760,000원으로 실질 재산 가치가 없고, 2017. 7. 17.경 위 I호 부동산의 시가는 68,087,000원인 반면 피담보채무액은 144,960,000원으로 실질 재산 가치가 없고, 2017. 7. 17.경 위 J호 부동산의 시가는 71,869,000원인 반면 피담보채무액은 91,200,000원으로 실질 재산 가치가 없다. 반면 F에게 앞서 본 소극 재산 채무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F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사해행위성립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F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F의 사해의사 및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 분양을 받은 피고 B 소유인데, 가장이자 남편인 망 F에게 그 중 1/2지분을 명의신탁을 해 놓았던 것이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이 F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면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망 F의 지분을 피고 B으로 이전한 2017. 6. 9.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약 620,0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F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310,000,000원 상당이었는데, N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428,900,000원, O조합에 88,008,800원, P에 대한 근저당채무 200,000,000원 등 716,908,8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책임재산이 일탈된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 B은, F이 무자력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이고, 그 1/2지분을 F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 B이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일응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매도인 주식회사 Q이 선의라 할 것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할 때, F과 피고 B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F 명의의 등기 또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바,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② 피고 B이 남동생 P에 대하여 실제로 금전을 차용하지 않고 근저당채무 200,000,000원을 설정한 사실은 피고 B도 인정(2022. 9. 26.자 피고 B 준비서면)하고 있는바, 피고 B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약 62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는 N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428,900,000원, O조합에 88,008,800원이므로, 그 차액 103,091,200(=620,000,000원 - 428,900,000원 - 88,008,800원) 중 1/2인 51,545,600원의 책임재산이 일탈된 것이다. 피고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서 더 살피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부 사이에 체결된 점, 그런데 F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실질 가치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던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F은 원고에 대한 위 각 양수금 채무를 포함한 위 소극재산(각 금융채무)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이 사해행위에 대하여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B은 F의 상속인들이 피고 C, D,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 B이 2017. 6. 29. F의 지분을 이전받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계속 변제해왔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가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 및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N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428,900,000원, O조합에 88,008,800원의 채무는 피고 B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점,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인 점(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

별지

1) 6,897,460원(=20,692,382원 × 3/9)인바, 원고가 계산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